

石油事業基金

운용현황과 展望

洪 起 斗

〈動資部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I. 머리말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石油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石油事業基金의 연간 조성규모가 9월말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미 금년초 국제원유가격 하락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국내유가 반영 원유가격과 국제원유가격의 차이를 국내유가에 반영시키는 대신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키로 정부 정책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견되던 것이었으나, 막상 현실로 나타나자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 대한 평가 논의가 内外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약세화 현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의 역할 재정립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실상, 어떤 정부 정책 또는 방침이든 어떤 현상을 대상으로 수립·실시되느냐만큼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이 변할 경우 정책 또는 방침이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本考는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석유사업기금의 현 위치를 확실히 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석유사업기금의 앞으로의 운용방향을 검토해 보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II. 세계 원유가격 변동에의 대응전략

1985년말부터 국제유가 하락세가 시현됨에 따라 정부는 1986년에 들어서서 2월 20일과 3월 29일 두 차례의 국내 유가인하를 실시하고, 5월에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정부 기본정책을 확정짓고, 5월 31일 석유사업

기금을 대폭 인상하여 국제유가하락분을 흡수함으로써 동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때 수립된 정부 기본전략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그 하락폭도 불안정하다는 판단하에 일시적인 여유재원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기본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유가격 동향

○OPEC는 1985년 12월이래 가격 지지정책에서 시장점유율 확보정책으로 전환후 세계 원유가격은 다소 진폭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지속

○제78차 OPEC 임시총회(1986. 6. 25~6. 30)에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

—사우디 등 온건파 10개 산유국은 OPEC의 생산쿼터를 연평균 1,760만B/D로, 유가확보 목표를 17~19\$/B로 합의

—이란 등 강경 3개국은 대폭적인 감산으로 高油價체제(28\$/B)로의 조속한 회복 주장

—7월 28일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인 OPEC 연장회의에서 국별 쿼터 배정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油價 하락세 지속 전망

—다만, OPEC과 非OPEC간의 감산 및 油價회복협상이 합의될 경우 다소의 油價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英國을 제외한 대부분의 非OPEC국이 감산 협력 의사 표명 또는 협력 예상

2. 기본전략

○불안정한 세계原油가격 및 수급전망에 대비하고 油價 하락에 따른 에너지절약 노력의 이완을 방지하며, 에너지 수급안정체제 강화

—국내油價조정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정반영

—稅收 확보 : 油價하락에 따른 석유관련 세수감소분의 보전

—基金징수 : 국내油價 인하와 세수보전후 잔여재원은 석유기금으로 흡수 油價변동에

대비

3. 대응조치

	조정권	1 차 (2.20)	2 차 (3.29)	3 차 (5.31)
기준원유도입단가 (\$/B)	27.57	22.89	22.89	13.08
유가조정(공장도%)	-	△12.93	△10.70	-
관세율 조정(%)	1	5	12	15
기금 징수비율 조정 (\$/B)	0.50	0.50	1.92	9.04

5월말 이후 석유사업기금 징수규모는 계속 상향 조정되어 왔으나, 이는 5월에 결정된 기본전략에 따른 운영에 불과하다.

Ⅲ. 86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

상술한 국제油價 변동에 대한 기본전략을 토대로 추가 징수되는 석유사업기금 사용을 위해 7월에 금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신규 추가징수분을 에너지 관련사업에 용자하여 油價인하추세로 흔들리고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산업을 지원정책방향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도록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石油事業基金의 조성

1986년중 석유사업기금 총 조성예산액은 1조 1,766억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85년도 移越額	4,326億원
2) 상반기 造成실적	2,081億원
○基金징수	1,677億원
○운용수익	382億원
(預置收益 282億원, 貸與收益 100億원)	
○融資회수금	22億원
3) 하반기 造成전망	5,359億원
○基金징수	4,796億원
○運用수익	525億원
(預置收益 317億원, 貸與收益 208億원)	
○용자회수금	38億원
計	11,766億원

조성액 중 신규징수액 6,473억원은 5~12월 평균원유 도입원가 15\$/B를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운용계획 수정시부터 불확실한 규모였다. 따라서, 계획 수정시 조성 규모 축소에 따른 사용분야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유도입 예상단가를 평균개념이 아닌 최소 예상치를 사용하였다.

한편, 운용수익의 경우는 조성액의 수익을 극대화함을 원칙으로 용자의 경우는 8.5~10% 이자수익(8.5%는 대여수익률, 10%는 용자수익률)을 계산하고 예치수익의 경우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10%를 계산했다.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운용수익 907억원이란 규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규모가 907억원을 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2. 石油事業基金의 사용

석유사업기금의 사용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투자: 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당좌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바꾸는 형태를 뜻하며, 비축시설 건설 및 원유비축 등이 이 형태에 포함된다.

○보조: 이는 기금관련사업의 비용으로 소비되는 형태로서 기금관리자인 石油開發公社의 운영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현재, 유전개발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보조와 다를 바 없는데, 유전개발이 성공불용자로서 투자위험이 크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로 계정처리를 하고, 성공의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법상 용자로 규정되어 있다.

○용자: 이는 基金이 타 사업에 유동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로서, 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당좌자산이 장·단기 대여금이란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금규모가 특별히 일시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 형태의 사용이 늘어나는데, 금년과 1982년에 용자규모가 컸으며, 이는 기금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기금의 사용은 투자 및 용자를 근간으로 하고, 보조는 투자 및 용자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선에서 억제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 상기에서 약술된 세가지 기금 사용형태별로 금년도 사용계획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투 자

금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상 1,425억원을 석유비축 시설건설 및 비축유 구입에 투자토록 되어 있다. 특히 비축유 11백만배럴 구입을 위해 1,300억원이란 막대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석유사업기금의 조성 목적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의 수급안정인만큼 국제유가가 인하여 추가조성된 기금을 우선적으로 값싼 원유 구입에 투자하여 유가반등에 대비함은 당연한 것이다.

나머지 125억원은 원유비축시설 및 LPG 비축시설 건설을 위해 쓰여지는데, 금년도 투자로 원유비축시설 건설은 계획대로 이미 마무리가 됐고, LPG 비축시설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事業名	支援規模 (億圓)	主要事業內譯
1. 石油備蓄事業 가. 비축시설건설	1,425 (125)	○U-2시설 건설 - 시설용량: 27,000千배럴 - 사업기간: 1980. 11-1985. 9 - 1986所要資金: 마감整理工事費 19億圓 ○LPG備蓄施設 건설 - 시설용량: 16萬톤 - 사업기간: 1984. 1-1988. 12 - 1986소요자금: 98億圓
나. 備蓄油구입	(1,300)	○비축목표(持續日數): 60일분 ○추가구입對象物量: 11百萬배럴

(2) 보 조

석유사업기금의 보조사업은 법상 石油開發公社 운영비 보조와 原油도입선 다변화지원 및 석유품질검사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전개발사업도 성공불용자이나 성공확률이 극히 적은만

금 보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법상 또 회계 처리상 용자로 취급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보조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금관리자인 석유개발공사 운영비 지원이다. 금년 기금운용계획상으로 117억원이 이를 위해 계상됐는데, 기금관리를 위한 운영비 외에 사업주체인 石油開發公社의 운영비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선 보다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선, 石油開發公社는 두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해 규정된 사업주체로서의 石油開發公社가 그 하나이고, 石油事業法상 석유사업기금 관리자인 석유개발공사가 또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사업주체로서의 석유개발공사는 그 중요성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이는 석유사업기금 관리가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석유개발공사가 아직도 본연의 사업영역을 확보 못하고 있음을 뜻할 수도 있다. 하여간 한 공사가 자체 설립법에 의해 정해진 영역에서 나오는 수입없이 他法에서 규정된 副收入으로 운영됨은 본질적으로 그 공사의 존폐에 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일,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공공성만으로 공사에 맡긴다면 이는 정부가 할 일중 골치아픈 일을 공사에 떠맡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보조사업은 原油도입선 다변화 지원으로 금년 기금운용계획상 296억원이 계상되었다. 이는 원유도입선이 중동지역에 치중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골육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중동이외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原油에 대해 추가 수송비 및 추가금용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마련됐을 때는 국제원유가는 公示價로 결정되었었으나, 현재 유가가 현물가 추세이고 중동의 원유가가 시장질서에 의해 결정되는만큼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석유품질검사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원이 보조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 중요성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 규모가 425억원으로 금년도 운용수익 90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용 자

금년도 石油事業基金 운용계획상 가장 특징적인 것은

事業名	지원규모 (億원)	主要事業內譯
1. 石油開發公社 운영비 보조	117	○ 비축사업 관련비용 : 105億원 ○ 개발사업 관련비용 : 12億원
2. 原油導入先 다변화 및 石油品質檢査지원	308	○ 原油導入先 다변화 지원 : 296億원 - 中東지역기준 원거리 지역 도입原油의 추가수송비 및 추가금용비 지원용 - 대상국가 : 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이집트 ○ 石油製品 품질검사항화로 소비자 보호 - 검사대상제품 • 燃料油 : 揮發油, 燈油, 輕油, 溶劑, 重油 • 潤滑油 : 자동차용潤滑油 등 14개품목 ○ 수행기관 : 韓國石油品質檢査所 (1983. 11. 15 설립)
가. 原油導入先 다변화	(296)	
나. 石油品質檢査지원	(12)	
計	425	

용자사업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이다. 이는 신규정수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석유사업기금의 역할 및 영역의 확대를 뜻한다.

우선, 石油事業基金은 2,520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자 재원으로 할당했다. 이는 원래 은행자금으로 조달키로 했던 재원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공급시설에 2,497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중 대부분은 외화표시자금 대체용이며, 신규 사업용으로 공급된 것은 석탄개발 및 저탄사업에 482억원과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380억원 등 862억원에 불과하다.

그밖에 유전개발에 190억원을 공급했는데, 국내 대륙 봉개발에 82억원과 해외유전개발에 108억원이다.

事業名	지원규모 (億원)	主要事業內譯
1. 油田개발사업	190	○국내 大陸棚개발: 82億원 - 第2 鑛區: 물리탐사 3,000 L-km - 第4 鑛區: 물리탐사 電算解讀 2,150 L-km - 第5 小區: 탐사시추 1 孔 ○해외油田개발: 108億원 - 인도네시아 아당鑛區: 물리탐사 400L-km, 탐사시추 1 孔 - 北예멘 마리브鑛區: 탐사시추 2 孔, 평가시추 1 孔 - 인도네시아 나우카鑛區: 물리탐사 500 L-km, 탐사시추 1 孔, 평가시추 1 孔
2. 에너지利用 합리화	2,520	○1986 에너지利用合理化事業 지원규모: 2,874億원 ○石油事業基金 지원대상 주요사업 - 産業체에너지절약시설: 1,504億원 - 石油代替에너지 이용시설: 516億원 - 集團에너지공급시설(半月, 남서울, 大邱染色工團): 400億원 - 住宅斷熱: 100億원 } 2,520億원
3. 에너지供給施設(融資) 가. LNG 基地 건설	2,497 (635)	○LNG引受基地 건설계획 - 공사기간: 1983. 4~1986. 12 - 貯藏탱크(10萬kℓ 3 基) 및 主配管건설(97km) - 首都圈 都市가스 環狀 配管網 建設(1985~1988) - 1987年부터 年 200萬톤의 LNG 도입 ○1986 總소요액 1,376億원중 産銀시설자금(外貨表示資金) 635億원代替지원용 - 外債輕減 및 연간 約 47億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 기대
나. 石炭개발 및貯炭자금 ○石炭개발 ○貯炭자금	(482) (200) (282)	○中小炭鑛지원소요액 630億원중 30%인 200億원을 지원 ○貯炭수준증량에 따른 추가소요자금 지원 - 夏季貯炭: 6,500千→7,000千톤 } 900千톤 増量 - 政府비축: 1,600千→2,000千톤
다. 都市가스 공급시설	(380)	○LNG基地 建設에 따라 보급망 확대에 필요한 需用家시설 설치지원 ○1986 需用家 內管施設 자금소요(762億원)의 50%수준 지원 ○1986 추가受惠가구: 254千가구 대상
라. 電源개발	(1,000)	○1986년도 電源開發관련 소요자금 65,451億원중 産銀施設資金(外貨表示) 1,000億원 代替지원용 - 外債輕減 및 연간 約 74億원의 利子비용절감효과 기대
計	5,207	

3. 예비자금

금년도 石油事業基金 운용계획상의 또하나의 특징은 예비자금의 운용이다. 예비자금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포괄성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그 정체부터 규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비자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운용계획상 포함된 용도 미확정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금년도 石油事業基金은 4,709억원이란 막대한 규모를 용도 미확정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예비자금도 原油추가비축 등 용도가 추후 확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하여 예비자금에서 용도가 확정된 금액을 제외시켜야 한다.

예비자금과 여유자금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선 石油事業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이란 금년 5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금운용상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금을 뜻했다. 이는 수입과 지출시점이 다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자금인 것으로 금융기관에 예입시켜 운용했었다.

그러나 금년 5월 시행령 개정시 여유자금을 국·공채 매입 및 재정자금·예탁규정을 둠으로써 여유자금을 보다 광의로 해석하지 않으면 법규 해석이 안되게 되어 버렸다. 국·공채 및 재정자금은 거치기간이 장기인만큼 과거의 여유자금 성격으로는 시행령 제17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현 시행령상으로는 볼 때, 여유자금이란 과거의 자금수지상 일시적인 여유자금만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상의 용도 미확정자금인 예비자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년도 基金운용계획상의 예비자금 4,709억원은 적절한 규모인가? 우선 기금운용계획이 수정되기 전의 예비자금 규모가 4,538억원이었던 것에 비교할 때, 수정계획상의 4,709억원은 거의 같은 규모이다. 따라서, 基金이 추가징수되기 전의 예비자금 규모가 적정한 것이었다면 수정계획상의 예비자금 규모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몇가지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로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과거의 기금은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유가의 비탄력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의 예비자금이 필요했지만, 국제油價가 하락세이고 국내유가에 반영된 평균원유도입자가 높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예비자금 보유는 그 정당성이 많이 약화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될 점은 시행령 제17조의 제2항 및 제3항이 있는 한 예비자금은 에너지 부문이 아닌 타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수가 늘게 되어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독립성을 잃게되는 대신 에너지 부문이 세수대상으로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되며, 좀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 부문이 타부문 보조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예비자금이 세금 대신 타재원 조달용으로 충분히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4. 石油事業基金의 규모

앞서 살펴본 운용계획상의 조성·사용 및 예비자금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는 추정 대차대조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表-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자산규모는 1986년말에 2조원을 넘을 전방으로 은행 예치금 형태로 약 6천억원, 장기 대여금 형태로 약 6,800억원을 보유할 전망이다. 동시에 원유보유수준도 금액기준으로 약 4,200억원에 이를 것이다.

IV. 石油事業基金의 운용현황

1. 石油事業基金 총괄

86년 8월말 현재 신규 조성분 5,122억원에 전년도 이월분 4,326억원을 합쳐 수입 총계는 9,448억원이며, 이중 2,653억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6,795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2. 基金 사용실적

총 사용실적 2,653억원의 사용내역을 사업별로 볼 때 〈表-2〉와 같은데, 이중 용자사업의 경우 용자조건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3. 여유자금의 운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이란 사업수행중 자

〈表-1〉 石油事業基金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1985년말 결 산	1986증감		1986년말
		증	감	
[자 산]				
유 동 자 산	900,999	256,565	6,293	1,151,291
1. 당 좌 자 산	543,724	126,497	5,978	664,243
1) 예 금	529,281	82,897	-	612,178
2) 단기대여금	5,978	43,600	5,978	43,600
2. 재 고 자 산	357,170	130,088	315	486,943
1) 원 유	288,951	130,000	211	418,740
3. 기타유동자산	105	-	-	105
투자외기타자산	243,997	476,000	43,857	676,140
1. 기 타 자 산	243,997	476,000	43,857	676,140
1) 장기대여금	243,642	476,000	43,600	676,042
고 정 자 산	192,160	143,064	146,955	188,269
1. 유형고정자산	192,160	143,064	146,955	188,269
자 산 총 계	1,337,156	845,752	167,208	2,015,700
[부채와 자본]				
부 채 총 계	11,927	1	6,417	5,511
1. 자 본 금	1,273,929	704,599	-	1,978,528
석유사업기금	1,273,929	704,599	-	1,978,528
2. 이익잉여금	51,299	31,661	51,299	31,661
자 본 총 계	1,325,228	736,260	51,299	2,010,189
부채외자본총계	1,337,155	736,261	57,716	2,015,700

〈表-2〉 石油事業基金 사용실적

(단위 : 億원)

事 業 別	1986계획	실적(8月末)
石油備蓄施設 건설	125	33
備蓄油구입	1,300	213
油田개발	190	94
石油開發公社운영비지원	117	70
原油導入先다변화	296	210
石油품질검사지원	12	8
에너지利用합리화	2,520	1,714
石炭개발	200	-
貯炭자금	282	281
가스公社外表資金代替	635	30
都市가스配管網건설	380	-
電源개발(外表資金代替)	1,000	-
合 計	7,057	2,653

금수지상 발생한 일시적인 보유자금과 계획상 계상되어 있는 용도 미확정본인 예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산이 안된 실정하에선 두 자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우선 8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6,795억원의 여유자금 중 향후 사용해야 할 4,404억원을 제외한 2,391억원을 용도 미확정 예비자금 현 보유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유자금 6,795억원은 은행의 예치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8개 시중은행과 産銀, 企銀 및 韓銀에 분산 예치되어 있다. 우선 韓銀의 경우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약 500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했으므로 편의상 동 규모를 통화안정증권 발행기관인 韓銀 예치로 볼 수 있으며, 産銀 및 企銀의 경우는 산업정책지원을 위해 석유사업기금의 예비자금을 예치해 두고 있다. 나머지 8개 시중은행의 예치는 원칙적으로 基金납부은행으로써 각 은행의 기금정수액을 1년만기 정기예치해 등에 따라 생겨난 것인데, 동원칙은 다음과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다.

첫째, 基金규모가 큰만큼 각 은행들의 基金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의 위험이 있으므로 基金납부은행에 해당 징수액을 예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서이다. 이는 기금측에서 금융질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치가 금융질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각 정유회사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전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만큼 基金납부은행의 기금 예치는 이에 대한 측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8개 시중은행의 원칙에 따른 예치가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통화량 팽창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사업기금 예치원칙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즉, 통화량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石油事業基金의 産銀 집중예치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중은행의 만기도래금은 비통화금융기관인 산업은행으로 즉시 이전 예치되며, 이에 따른 석유사업기금의 유동성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선 예치후 인출시까지 시중은행 만기도래금과 같은 연리 10%를 보장해 주고 있다.

V. 86년 石油事業基金 조성전망

최근들어 石油事業基金 조성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계속 취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1조1,766억원이란 조성규모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성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 계획시 5~12월 原油평균도입단가를 배럴당 15달러로 보고 基金징수액을 배럴당 6.29달러로 보았으나, 현재 평균원유도입단가가 8.84달러로 기금징수액이 배럴당 15.56달러이므로 엄청난 규모의 징수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고 있는 원유는 2~3개월 전에 계약된 것인만큼 연말까지 현재의 10달러 이하의 도입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0~12월 평균 원유도입단가를 배럴당 13달러 정도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럴 경우 약 2,300억원정도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둘째, 9월 22일 이후 정유사 자금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61일간 기금징수유예조치가 취해졌으며, 동시에 내국적 외항선에 대한 기금의 환급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약 1,700~1,800억원이 기금 징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의 영향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 500~600억원의 基金 추가조성이 전망되고 있다.

〈表-3〉 1986 石油事業基金 조성전망

(단위: 億원)

	계 획	전 망 ¹⁾				
		12\$/B	13\$/B	14\$/B	15\$/B	
이 월	4,326	4,326	4,326	4,326	4,326	
징 수	총 규모	6,473	9,200	8,750	8,300	7,850
	△징수유예 ²⁾	-	△2,000	△1,750	△1,500	△1,200
	실 징수액	6,473	7,200	7,000	6,800	6,650
운 용 수 익 ³⁾	907	950	950	950	950	
회 수	60	60	60	60	60	
합 계	11,766	12,536	12,336	12,136	11,986	
계 획 대 비	-	770	570	370	220	

註: 1) 10-12월 평균 원유도입단가(기금징수기준)
 2) (기금징수액-1.92\$/B) 상당액을 9. 22이후 61일 징수유예

VI. 87년 石油事業基金 운용전망

1. 基金조성 전망

87년도 基金조성규모를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현재의 油價정책을 87년 중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하는 것부터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현 원유관세율 15%가 과연 지상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대로 25%로 인상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基金 조성규모를 전망함에 있어 국제원유가 전망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임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정한 전제하에서 基金조성규모를 전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本考에선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내년도 基金조성규모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 (1) 현 석유제품 복합단가 23,429원/Bbl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2) 原油관세율은 15%에서 25%로 인상된다.
- (3) 基金징수대상 원유도입량은 3% 증가된다.
- (4) 환율은 865원/\$로 인하된다.

이상과 같은 가정하에 국제원유가격 15\$/B~18\$/B 시에 기금조성규모를 대략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億원)

	15\$/B	16\$/B	17\$/B	18\$/B
1986 이 월	5,300	5,300	5,300	5,300
1987 조 성	8,300	6,500	4,600	2,800
-신 규 징 수	6,800	5,000	3,100	1,300
-운 용 수 익	1,100	1,100	1,100	1,100
-회 수	400	400	400	400
計	13,600	11,800	9,900	8,100

한편 원유관세수입 역시 관세율 인상으로 기금규모와 맞먹는 수준인 5,000~6,00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단위: 億원)

FOB, \$/B	15	16	17	18
기금징수규모	5.42	3.96	2.50	1.04
관세징수규모	4.04	4.29	4.54	4.79
관세징수액	5,056	5,369	5,682	5,995

2. 基金 사용전망

基金조성 전망이 확실한만큼 基金 사용을 전망함은 그 의의조차 의문시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현 유가수준이 유지될 경우 조성규모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만큼 사용역시 금년 패턴을 따를 것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사용부문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예비자금규모일 것이다. 즉, 타부문에서 엄청난 규모의 보유자금을 그냥 놓아둘 리 없는만큼, 이렇게 될 경우 기금을 놓고 에너지부문과 기타부문, 동자부와 타부처간에 서로 양보하기 힘든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같은 가상하에서 볼 때 에너지 주무부처인 동자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두 말할 여지없이 자금을 건지않는 것일 것이다. 즉, 基金

은 基金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국내 油價를 인하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油價인하는 이때까지 형성해온 脫石油기반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油價를 인하시키면서 일부 基金으로 여유재원을 흡수하여 脫石油기반 확충에 사용함이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여유자금 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

/古/事/成/語/

糟糠之妻

後漢의 光武帝에게 벼슬한 宋弘은 정중하고 후덕하며 정직하게 알려진 사람으로, 建武 2년에는 승진하여 大司空이란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런데 당시에 광무제의 누나인 湖陽公主가 미망인이 되었다. 그래서 광무제는 여가가 있으면 누나를 위로하고, 또 그때마다 조정의 신하들을 이야기하며, 호양공주가 누구에 대하여 호의를 품고 있는가를 은근히 살폈다.

그러자 어느때 공주가 이렇게 말했다.

『송공의 의연하고 덕을 갖춘 품모는 여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무제는 누나에게 약속했다.

『잘 알았습니다. 제게 맡겨 두십시오.』

그 뒤에 송홍이 용무가 있어 광무제의 부름을 받았을 때, 광무제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누나를 병풍뒤에 앉혀 놓고, 송홍과의 주고받는 말을 은근히 듣게 했다. 용건을 마치자 광무제는 지나가는 말투로 송홍에게 물었다.

『흔히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높은 지위에 있으면 천하던 때의 친구를 버리고 상

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부유해지면 가난할 때의 아내를 버리고 상당한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인정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송홍은 잘라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변천할 때의 사귀는 잊지 말아야 하고, 조강지처(糟糠之妻)는 몹시 소중하여 버리지 말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무제는 돌아보며, 『잘 되지 않는군요』하고 은근히 누나에게 알렸다고 한다.

물론 송홍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어, 송홍은 이를 존중한 것이며, 광무제도 그 조강지처를 억지로 내쫓고서 누나의 희망을 채워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조(糟)는 술지게미를 뜻하고, 강(糠)은 찻겨를 뜻하며, 몹시 거친 음식을 말한다. 그래서 「조강지처」란 그와 같이 거친 음식을 먹고 온갖 고생을 함께한 아내라는 뜻을 의미한다. ☐